【별표 2】

건물의 용도 분류기준

(제8조 및 제10조 관련)

시설명	용 도 구 분	시설명	용 도 구 분
공동주택	· 아파트	문화 및 집회시설	·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집회장, 공연장, 집회장
	· 연립주택		· 관람장, 전시장, 동.식물원
	· 다세대주택	판매 및 영업시설	· 도.소매장
	· 기숙사		· 1,000㎡이상의 상점
1종 근린 생활시설	· 1,000㎡미만의 슈퍼마켓, 일용품소매		· 여객자동차터미널, 물터미널, 철도역사, 공항시설, 항만시설
	· 300㎡미만의 휴게음식점	의료시설	· 병원 및 장례식장
	· 이·미용원, 일반목욕장, 세탁소	교육 및 복지시설	· 학교
	· 의원, 한의원, 조산소, 안마시술소		·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
	· 500㎡미만의 탁구장, 체육 도장		· 연구소, 도서관
	· 1,000㎡미만의 동사무소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국, 도서관		·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
	· 마을공회당, 마을공동구판장, 마을공동작업소		· 생활권 및 자연권수련시설
	· 대중음식점, 다과점, 다방, 기원	운동시설	·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
	· 변전소, 양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		·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
	· 일반음식점, 기원	업무시설	·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
2종 근린 생활시설	· 테니스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		·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업소, 사무소, 신문사, 오피스텔
	· 300㎡미만의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	숙박시설	· 일반 및 관광숙박시설
	· 500㎡미만의 금융업소, 사무소, 결혼상담소, 출판사	위락시설	· 특수목욕장
	· 500㎡미만의 제조업소, 수리점, 세탁소		·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단란주점
	· 500㎡미만의 단란주점		· 유흥주점
			·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
			· 무도장과 무도학원

※ 상기 이 외의 시설 및 세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【별표1】참조